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비교연구: 독일과 미국의 법원조직을 중심으로

김 정 해* · 최 유 성**

〈目 次〉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독일과 미국 법원의 운영 현황
- IV. 독일과 미국의 법원 비교분석
- V. 결 론

〈요 약〉

본 연구는 독일과 미국의 형사사법기관인 법원조직의 운영과 구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비교론적 관점에서 각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비교를 위한 기준을 추출하고 이를 유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법체계,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으로 나누어 비교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둘째, 비교 분석에 앞서 독일과 미국의 형사사법기관인 법원의 조직구성과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분석틀에서 제시된 기준별로 독일과 미국의 사법체계, 법원조직의 구성와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개편 및 개혁 작업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법원, 형사사법체계, 독일, 미국, 사법개혁】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소장

I. 서 론

김영삼정부 아래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정권이 변화될 때마다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참여정부는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실질적인 개혁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다양한 국가의 법제 및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을 통한 벤치마킹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학분야에서는 법률내용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각국의 사법조직이나 운영방식 및 사법행정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연구는 부분적으로만 연구되어 왔다. 특히, 선진국의 법원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관리론적 관점에서 사법선진국인 독일과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으로서 법원조직의 운영과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론적 관점에서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관한 이론과 유형화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각국별로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조직구성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분석틀에서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미국과 독일의 법원조직을 비교분석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최근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개편 및 개혁 작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¹⁾

1) 본 연구의 범위는 독일, 미국 법원 조직과 운영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특히,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해당 선진국 방문을 통해 단순한 제도 및 기구에 관한 조사연구뿐 아니라 운영상의 경험 등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 구성 및 운영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다양하고 광범위한 범죄발생과 늘어가는 범죄율 등은 이를 직접 다루는 사법체제의 구성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은 사법 분야 연구에서도 국제적인 시각과 기준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이나 마약밀수와 같은 범죄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국가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Reichel, 2002: 3). 이러한 문제의 국가간 협력과 국가 상호간 차이를 사전에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각 국가는 자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하다. 자국의 시각에만 몰입되다 보면 환경이 변화되고 사고가 변화되더라도 기존의 체계만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다양한 체제에 대한 탐구는 새로운 대안적 체계를 고안해 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체제에 보다 나은 차원의 대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비교를 통한 통찰력의 향상은 학문적인 연구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개혁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제고해 준다. 타국의 경험과 교훈은 개혁의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특히, 역사적 접근, 정치적 접근, 기술적 접근방식이 대표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ichel, 2002: 11-15).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방법들의 선택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접근이란 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주요한 목적은 비교 국가에 어떤 실패와 성공사례가 있었는가, 현재에 도움이 될 만한 초기의 경험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국의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한 국가의 사법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정치적인 여건과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상황에 따라 형사사법의 절차와 방식 그리고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Terril, 1982). 정치가 국가의 사법행정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정

치가 어떻게 국가간 상호관계에 영향을 주는가, 국가의 법적 전통은 정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 등을 밝히기 위해서 정치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²⁾

셋째, 어떤 제도에 대한 분석과 개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 어떻게 그것이 운영되는가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며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에 앞서 그 체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있고 조직화되어있는 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기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는가, 그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주요 행위자들은 누구인가 등이 중심내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교접근방법 중에서 사법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기술적인 접근방식을 중점적으로 하되, 정치적 역사적 접근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2. 국가 비교를 위한 유형화

1) 사법체계의 비교

① 법체계

오늘날 세계의 사법체계를 분류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체계와 전통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각 국가의 법률전통은 법체계의 발전과 형태에 영향을 주는 아주 독특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면, 자연법에 대한 태도, 사회에 대한 법의 역할, 법체계의 운영방식, 법의 제정 및 적용 등에 대해 역사적으로 조건 지워지고 국가체계에 뿌리 깊게 내재되는 것들이 이러한 법률전통의 예이다. 한 국가의 법체계가 다른 국가의 법체계와 정확히 일치할 수 없으나 특정국가의 법률전통은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법체계를 구분 할 때 전통을 기초로 하여 유사성에 따라 집단화할 수밖에 없다 (Merryman, 1985: 1–3). 학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법률전통을 기준으로 법체계는 보통법체계, 시민법체계, 사회주의법체계, 이슬람

2) 비교대상 국가의 권력이 집권적인가 분권적인가, 또 민주화된 국가인가 권위적인 국가인가 등 정치적인 성격과 맥락에 따라 그 나라의 사법체계가 많이 달라진다. 사법기구들이 갖는 권력의 크기나 이들 기관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요인은 형사사법체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법체계 네 가지로 구분된다(Reichel, 2002: 93).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대륙법계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로 구분한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가장 큰 차이는 불문법, 즉 판례법의 지위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추후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과가 없으나 영미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법원의 결정이 추후의 재판을 구속한다(이윤근, 2002: 374).

② 형법체계

사법체제는 국가마다 형사법과 형사절차법 등에 의해 보다 자세히 규정된다. 각 국의 형법체계는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절차법에 있어서 국가 행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범죄통제모형(Crime Control Model: CCM)이고 둘째는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합법절차모형(Due Process Model: DPM)이다(Packer, 1968).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제 모형(CCM)은 범죄억제를 목표로 효율적인 사법행정체제를 추구하는 모형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중시하며 경찰과 사전심리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자유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제도이다(Cole & Smith, 2002: 7). 이러한 범죄통제모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높은 체포율과 신속한 절차에 따른 판결 등을 요구한다. 신속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정형화된 판결과 절차를 보다 중시한다는 것으로 행정적이고 관리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범죄통제 모형에서는 “유죄의 추정(presumption of the guilty)”을 기반으로 다양하고 많은 사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무죄일 가능성이 있는 혐의자를 풀어주거나 범죄자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매우 강력한 권한을 지닌다.

둘째, 합법절차모형(DPM)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둔 모형으로 정보의 확실성 및 신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당사자주의적인 절차를 중시하며 중요한 결정은 법원에서 수행하고 의사결정의 기초도 법(law)이다(Cole & Smith, 2002: 8). 범죄통제모형이 마치 조립라인과 같다면 합법절차모형은 장애물 코스와 같다. 이 모형은 변론과정, 피고의 권리, 공식적 의사결정절차 등을 중요시 하고 강조한다. 또한 실수를 줄이

기 위하여 정부는 피고가 유죄임을 명확히 하도록 강제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강한 권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죄가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이다. 이 합법절차모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헌법적 권한을 존중해주고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고 규칙을 따르면서 공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모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에 특히 강조점을 두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모형이다.

〈표 1〉 합법절차모형과 범죄통제모형 비교

	목표	가치	과정	중요결정지점	결정의 기초
합법 절차모형	개인의 자유보호	신뢰성	당사자주의	법원	법
범죄통제모형	범죄억제	효율성	행정적	경찰 사전공판절차	자유재량

2) 형사사법기관의 조직 비교: 법원을 중심으로

① 국가체계에 따른 분류

국가체계가 단일국가체제인지 연방 국가인지에 따라서 법원의 체계도 달라진다. 국가의 체계는 국가의 존립형태와 중앙정부의 권력이 어느 정도 강하게 행사되는가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단일국가, 국가연합, 연방제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진덕규, 1995: 259-261). 그러나 국가연합은 초국가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국가체계는 단일국가와 연방제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단일국가에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해당되며 연방국가의 예로는 독일, 미국, 캐나다 등을 들 수 있다. 연방국가는 각 연방 소속 지방의 하부국가와 중앙의 연방국가 사이에 책임과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치제도이다. 따라서 단일국가체계는 법원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방국가에서는 정치체계와 유사하게 대부분이 이중체계(dual system)로 법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그것이다(김종구, 2004; 장병혜, 1983: 394).

② 재판권에 따른 분류

재판권이 분리되어 있는가의 기준에 따라 동일 법원에서 형사, 민사, 행정 소송을 담당하는 일원체계인지 재판권이 여러 특별법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체계인지도로 구별될 수 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는 민·형사를 담당하는 일반법원 외에 각 주의 법원도 노동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사회법원 등 여러 개의 특별법원으로 재판권이 분산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독일과 유사하게 다양한 전문법원이 구성되어 있다(이원우, 2001; 김종구, 2004: 153). 이로 인하여 민·형사를 담당하는 일반법원의 업무량이 그만큼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원체계가 중심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을 보완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재판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법원을 분리하여 운영하지는 않는다.

③ 심급체계에 따른 분류

여러 국가의 법원조직에 대한 검토를 해 보면, 국가별로 유사성과 특이성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직 간의 유사성은 특히 기본적 조직의 구조가 상, 중, 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 삼심제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이러한 기본 골격 위에 많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을 다 포괄하여 분류 체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보다 단순하게 항소를 몇 차례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삼심제인가 이심제인가를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 분류 할 수 있다(Reichel, 2002). 이는 국가별, 사안별 법원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다.

3) 형사사법기관의 운영방식 비교

법원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송절차의 신속성이나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을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논의들은 배제되어 왔으나 최근 사법개혁 논의를 통해 고객위주의 법률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와 사법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소송절차의 신속성, 민주성 제고, 법원행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각 국의 제도를 살펴보자 한다.

① 소송절차의 신속성

형법체계상 합법절차모형을 지닌 국가가 범죄통제모형을 지닌 국가에

비해서 소송의 절차나 시간이 훨씬 많이 듈다. 이는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증거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당사자주의적 관행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절차모형을 지닌 국가들은 이러한 소송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적인 타협체계나 약식절차를 마련하여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하고 법원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공판 초기 단계에서 유무죄 답변을 하도록 하는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 라든지 유죄답변협상(Plea Bargaining)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실제로 극소수의 사건만을 배심재판의 공판절차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김종구, 2004: 241). 또한 비법관출신인 치안판사제도를 두어 경미한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인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준다.

또한 빠른 사건처리절차를 지닌 범죄통제모형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신속처리 절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건을 질서위반죄, 경죄, 중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사건처리절차를 다양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다(김종구, 2004: 173). 또한 일본의 경우는 간이재판소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선진국이 많이 있는데 프랑스의 치안법원, 독일의 구법원 등이 그러한 예이다(사법개혁위원회, 2004a). 이를 통해 사법기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법원의 문호를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② 사법체계의 민주성 제고

본질적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실현시키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입법·행정부와 비교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다.³⁾ 정종섭(2001: 419)에 의하면 국민주권을 국가작용의 최고 이념으로 하는 헌법국가에 있어서 사법작용에 국민의 참여는 선택의 문제 가 아닌 필수이며 국민의 사법참여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

3) 이에 대해서는 통치기관인 입법·행정부의 구성 및 권한행사에는 국민주권원리에 근거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 통제가 당연시되는 반면에 사법부의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반론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법절차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사법개혁위원회, 2004b).

- i) 수사 및 공소제기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 심사회 등),
- ii) 법관임명과정에서의 국민참여(미국의 법관선거제, 일본의 최고재판 소 판사에 대한 국민심사제 등),
- iii)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 iv) 기타(조정위원회, 일본의 사법위원회 · 참여원 제도 등),

③ 법원행정

법원행정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각 법원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법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행정지원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분권형 방식’과 연방법원 전체 또는 주법원전체를 관할하여 행정지원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집권형 방식’을 들 수 있다(Cole & Smith, 2002: 250–251). 같은 연방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는 분권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집권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법원의 운영을 판사들이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판사들은 주로 자신의 관할 법원의 운영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촐전반이나 연방전반에 걸친 법원행정의 통일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다. 실제로 판사들은 로스쿨에서 법률가로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법원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관리, 예산, 인사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행정부나 의회에서 부과되는 여러 문제들과 일관된 행정절차 및 감독 체계의 제공, 고용문제와 예산문제들을 다루려면 통일된 단일 행정지원체계가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법원 및 주법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한 조직이 설치되었다.

4) 1)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국가의 사법작용에 실현시킨다. 2)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 및 재판제도의 관료화를 방지한다. 3)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4) 국민의 사법참여는 재판제도를 발전시킨다. 5)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6) 국민의 사법참여는 사실인정에 기여한다.

3. 비교 분석틀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독일, 미국의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법원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그 차이와 유사성을 <표 2>의 분석틀에 따라 비교하고자 한다.

<표 2> 분석기준 표

구 분	기준 및 유형		비 고
사법 체계	법률 성격	대륙 법계 모형	성문 법/직권주의
		영미 법계 모형	불문 법/당사자주의
	형법 체계	합법 절차 모형	당사자주의/신뢰성/자유보호/법원
		범죄 통제 모형	행정적/효율성/경찰·검찰중심
조직 구성	국가 체계	단일 체계	중앙집권
		이중 체계	연방법원/주법원분리
	재판권	일원 체계	동일 법원내에서 다수의 재판관 할
		분리 체계	재판관 할 별로 법원 설치
	심급	이심재	심급 체계 1~2단계
		삼심재	심급 체계 1~2~3단계
	소송절차의	간이 재판소	구법원 및 구판사제도/치안판사제도
운영 방식	신속성	범죄 처리의 다양화	중죄, 경죄 구분/질서 위반법
	민주성제고	국민사법 참여	배심 제도/명예법관 제도
	법원 행정	집권화방식	별도의 행정 조직을 법원과 분리하여 운영
		분권화방식	각 법원 별로 행정 조직 운영

III. 독일과 미국 법원의 운영 현황

1. 독일

독일연방의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와 연방법원, 그리고 주의 법원에 의해 행사된다(독일연방기본법 제92조). 연방최고법원(Oberste Gerichtshofe des Bundes)으로는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연

방사회 법원 (Bundessozialgericht), 연방노동법원 (Bundesarbeitsgericht), 연방재정법원 (Bundesfinanzhof) 이 있다(기본법 제95조 제1항). 기타 고등법원 성격의 연방법원으로는 특허법원, 정계법원, 군형사법원이 있다(기본법 제96조). 각 주는 하급심을 담당하는 독일법원들을 관할하며 주법원들의 최종심 또는 상고심은 법률에 의해 제3심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의 5개의 최고법원들이 관할한다. 주법원은 연방법도 적용하므로 재판은 일차적으로 주법원에서 심사하고 불복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법원에서 심사될 수 있다(헌법 제 99조). 독일의 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는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연방헌법재판소와는 별도로 주의 헌법재판소를 가질 수 있다. 각 주는 연방과 마찬가지로 재판권에 따라 독립된 개별 법원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다양한 법원들 중 민·형사 사건의 일반재판권을 행사하는 통상법원을 중심으로 조직구성과 운영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법원은 심급에 따라 구법원, 주지방법원, 주고등법원, 연방대법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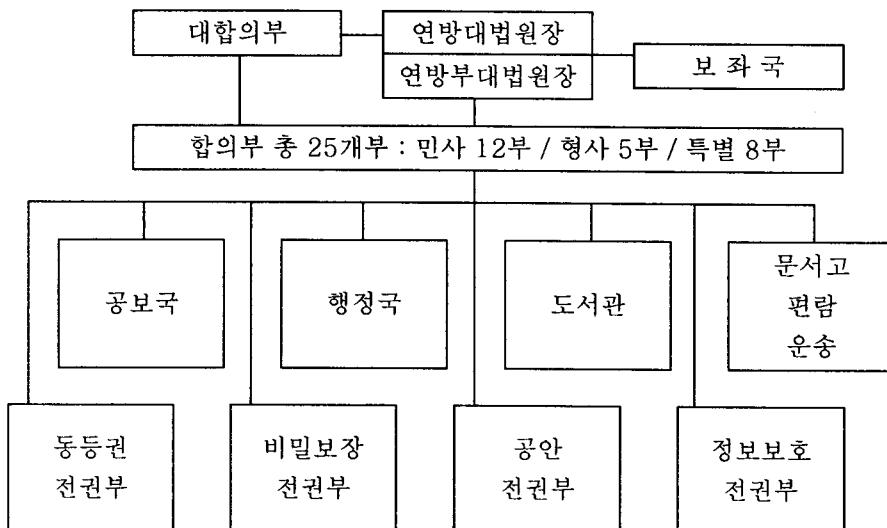
<표 3> 통상법원 재판관할의 구성체계

	민사재판		형사재판					
	소송	비송	중범죄 이외의 범죄			중범죄		국가안보 사건
연방통상법원	상고심		형사부			형사부		형사부
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항고	형사부					형사부
지방법원	항소심	제1심	항고	형사소부	소년부	형사 대부	소년부	
구법원 (단독판사)	제1심		제1심	단독 판사	배심 법원	소년부 단독 판사	소년 배심 법원	관할권 없음

1) 연방대법원

독일의 연방대법원은 민·형사사건의 상고심법원이며 현재 민사 12개 부 형사5개 부 특별 8개 부로 나뉘어져 있다. 민사, 형사, 특별 재판부는

각각 재판장 1인과 배석판사 4인으로 된 5인의 합의부(Senat)로 구성된다. 또한, 재판에 의한 법 형성과 판례의 통일을 위하여 대합의부를 두고 있으며 법원장과 8명의 소속법관들로 구성된다. 판례변경 등은 법원장과 대합의부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연합대합의부에서 다룬다(김종구, 2004: 168).⁵⁾ <그림 1>은 2004년 8월 독일 연방대법원 홈페이지 상의 조직도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1> 독일 연방대법원 조직도

연방대법원은 연방대법원장 1인과 연방부대법원장 1인 그리고 총 9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국의 경우 총무과, 주요기록과, 유지보수과, 판사담당인사과, 재정 및 차량관리과, 봉급관리과, 복지과, 정보기술과, 채용직담당인사과, 내부행정 및 조달과로 업무를 구분하여 연방대법원의 행정

5) 2003년 12월 12일 조사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총인원수는 416명으로 판사 127명, 법원공무원 149명, 피고용인 1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47명의 국립과학수사관이 있는데 이들은 3년 동안 연방대법원에서 일하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판사는 기본적으로 35세 이상이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하며 두 개 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연방대법원판사는 연방법무부장관과 국회에 의해 임명된 연방과 주의 법무부장관 16인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지방법원의 판사들이며 변호사나 공무원출신은 매우 적다(연방대법원 공보국 소속 MS. Kortage와의 인터뷰, 2004년 8월 11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공보국, 문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 도서관과 4개의 대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2) 州고등법원

주고등법원 재판부는 직업법관으로 구성되며, 형사사건은 지방법원이 항소심으로서 관할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과 침략전쟁선동죄(독일 형법 제80조)와 국가반역죄(독일 형법 제81조)에 대한 1심 사건을 관할한다. 또한 지방법원이 항소심인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형사재판부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관할하는 형사사건은 5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관장한다(김원치, 1983; 김종구, 2004: 167–168). 프랑크푸르트 주고등법원의 경우는 민사합의부 28개, 형사합의부 5개, 가정합의부 6개, 특별합의부 11개 이상 4개합의부로 구성되어 있다.

3) 州지방법원

독일의 지방법원(주법원, 州法院)은 전국에 116개로 그 관할은 다음과 같다(김종구, 2004: 167). 지방법원은 구법원이나 주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모든 형사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처리한다. 지방법원 형사부는 구법원 또는 주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죄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서 관할권이 있고, 징역 4년을 초과하는 자유형 또는 피의자의 정신병원 수용, 단독으로 혹은 형벌에 병과하는 보안감호수용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방법원에 바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하여도 관할권이 있다(법원조직법 제74조 제1항)(김홍창, 2003: 12). 특히 관할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은 중죄법원에서 처리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해당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법원 단독판사 또는 참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재판을 주고등법원 형사부에서 담당한다(법원조직법 제74조 제2항, 제3항). 형사부는 소형사부(Kleine Strafkammer)와 대형사부(Grosse Strafkammer)로 운영되는데 소형사부는 구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며 1명의 직업법관인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하고 2명의 참심원이 배석을 맡는다. 대형사부는 주지방법원이 1심인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참심원으로 구성된다.

4) 구법원(區法院)

구법원은 독일 시·군 등 전 지역단위에 693개가 설치되어 있다. 구법원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주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거나 州고등법원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법정형이 자유형(Freiheitsstrafe) 4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⁶⁾과 법정형이 자유형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청소년보호사건⁷⁾을 관할한다. 법정형이 자유형 2년 이하인 사건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되고 기타사건은 판사 1인과 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 참심재판부에서 처리된다(김홍창, 2003: 12). 판사로 임명된지 1년 이상이 되어야 참심법원의 재판장이 될 수 있으며 참심원의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참심원은 4년의 임기로 선발되며 구체적으로 공판에 참여하는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참심원은 명예직이므로 보수는 없으나 활동비나 교통비와 같이 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는 ‘명예판사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단독판사나 참심법원의 심리 결과, 더 높은 형이 예상될 때는 州지방법원으로 이송된다(김종구, 2004: 166-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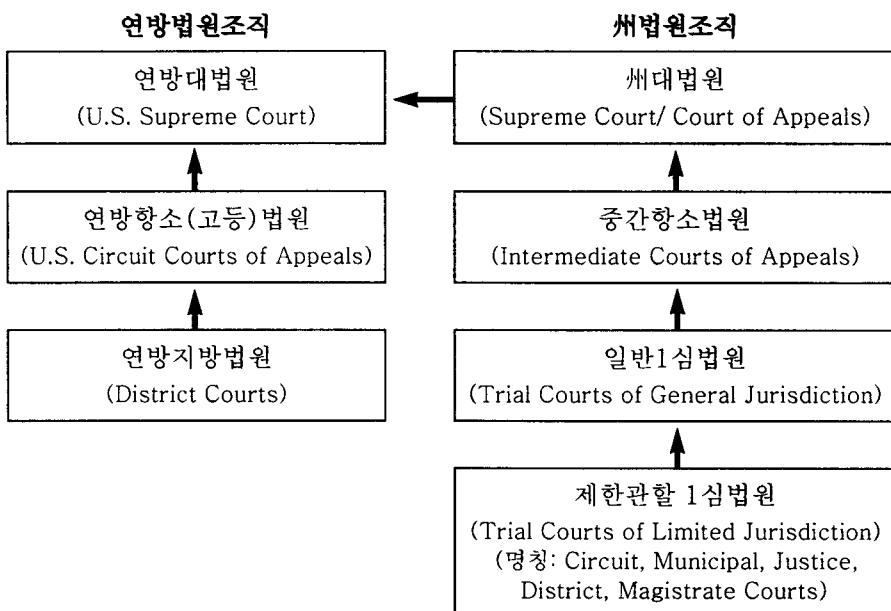
2. 미국

미국의 법원구조는 연방주의 헌법을 채택함에 따라 <그림 2>와 같은 이원적인 조직체계를 갖고 있다(Cole and Smith, 2002: 247).

미국에는 두 개의 다른 법원조직으로서 연방법원(federal court)과 州법원(state court)이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개의 다른 법원조직은 분쟁의 해결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기능은 물론이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갖고 있

6) 살인죄 또는 경미한 국가보안사건 등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모반죄 등 중요한 국가보안사건 등에 의하여 주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개개사건에 있어서 예상되는 형이 징역 4년의 자유형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정신병원수감 또는 보안감호 수용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7) 청소년보호사건은 성인이 범죄행위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다치게 하거나 위태롭게 한 사건 및 성인이 청소년 교육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건특히 검사가 사건의 중요성으로 인해 지방법원에 공소제기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검사는 구법원에 설치된 소년법원이나 일반 형사법원에 공소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어린이나 청소년이 중인으로 소환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소년법원에서 심리함이 적합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년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림 2> 미국 법원조직의 2원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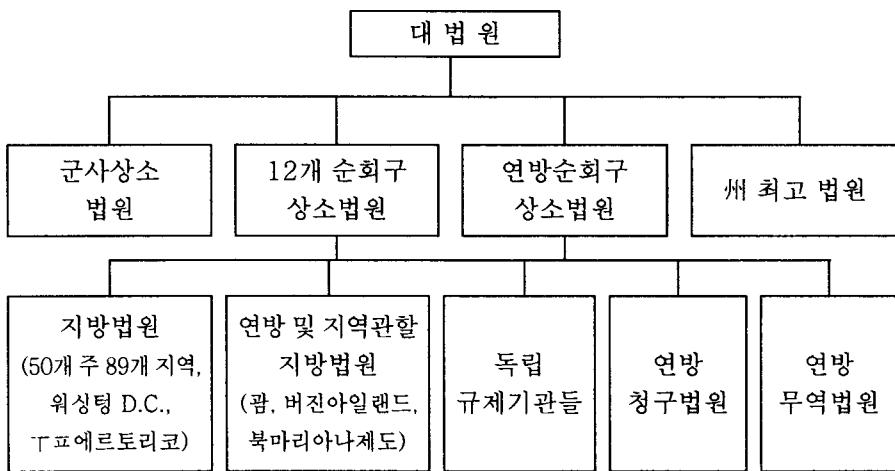
는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 주마다 독자적인 법원구조를 갖고 있다.

1) 연방정부의 법원조직

연방법원은 심리법원으로서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라 불리우는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으로서 ‘순회 항소법원(Circuit Court of Appeals),’ 그리고 대법원(Supreme Court)의 3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사법권은 헌법 제3조1항⁸⁾에서 그 존립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업무 수행상 법률집행권이 증가함에 따라 헌법 제3조에 의한 법원만으로는 폭주하는 재판을 다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의회는 제3조에 의해 설립된 법원과는 별도로, 헌법 제1조7항9절의

8) “미합중국의 사법권은 하나의 최고법원과 의회가 때때로 제정하여 설립하는 하급법원들에게 부여된다” 또한 제3조1항은 “최고법원이나 하급법원의 판사들은 품행이 좋은 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정기적으로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으며, 보수는 임기 중에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판사들의 종신직을 보장하고 보수의 삭감을 금지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림 3> 미국연방법원의 구조

“그 밖의 재판기관들(Tribunals)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에 의거해 많은 재판소들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연방법원은 ‘제3조에 의한 법원(Article III Court)’과 ‘제3조 아닌 법원(Non-Article III Court)’으로 구별되기도 한다.⁹⁾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법권에 대해 논할 때에 중요한 것은 ‘제3조에 의한 법원’들이다. 이들 ‘제3조 법원’의 관할권은 <표 4>와 같다.

①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연방법원 조직상, 일반관할권(general jurisdiction)을 가진 1심법원을

9) ‘제3조 아닌 법원’의 판사들은 종신 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그 임기를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감봉 금지의 원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3조 아닌 법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Court of Federal Claims(연방정부에 대한 민사청구권을 심판), (2)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국제무역쟁의에 대한 심판권 행사), (3)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Services(군법회의로부터의 항고사건 취급), (4) Tax Court(연방정부와의 세금에 대한 쟁송을 취급), (5) Court of Veterans Appeals(군복무 후의 혜택에 관한 소송을 담당), (6) Immigration Court(외국인의 미국 입국과 이민에 관한 쟁의를 판결), (7) Bankruptcy Court(파산신청한 개인 및 법인체에 관한 처리를 담당함), (8) Magistrate Court(형사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감시하는 역할과 지법판사를 보좌하는 역할담당)

〈표 4〉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고등)법원	연방대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심 관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법 형사소송 - 연방법 민사소송 - 다른 주 주민간 민사소송 (5만 달러 이상 사건) - 해사(海事)사건 - 파산 소송 - 연방행정기관 결정의 심사 - 기타 연방의회가 위임한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심 관할권 없음 ■ 다음 법원으로부터의 상소관할권(선별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지방법원 - 독립규제기구 - 기타 특수 연방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법원으로부터의 상소관할권(선별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지방법원 - 州대법원 ■ 제1심 관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 州정부간 사건 - 연방정부- 州정부간 사건 - 외국 외교관 연관 사건 - 주정부와 他州 주민간 사건(주정부에 의한 소송의 경우)

‘지방법원’ (District Courts)이라고 한다. 각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주를 지역적으로 나누어 해당 특정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어느 州에나 최소 하나, 인구가 많은 주에는 두세 개 혹은 네 개까지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법원의 명칭은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ame of state)’으로 정해진다. 각 지방법원에는 최소 두 명의 판사가 배속되어 있고, 큰 지역에는 30명 가까운 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지방법원의 수는 94개인데, 그 중 90개의 지방법원은 미국의 50개 州에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 네 개는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버진아일랜드(Virgin Islands), 괌(Guam) 및 마리아나군도(Northern Mariana Islands)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다.

② 연방순회항소법원 (U.S. Circuit Court of Appeals)

연방법원제도의 항소법원(혹은 고등법원)을 ‘U.S. Circuit Court of Appeals’라고 부르는데 지방법원으로부터의 모든 항소사건이 여기로 올라온다. 소송사건들 중 대부분의 경우는 항소법원에서 끝나는데 이는 연방법원의 조직이 이론상으로는 3심제도이지만 실제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받았다는 경우는 연간 120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은 미국 전체를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한 지역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나눈 각 지역을 ‘순회지구(circuit)’라 부른다.¹⁰⁾ 12개의 항소법

원은 각기 자기 순회지구에 위치한 지방법원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민사 및 형사재판의 항소사건들을 심판한다. 제2심 항소만 다루는 이들 항소법원에서는 3인 합의부로 심판하는데, 사실심리는 하지 않고 법률심사만 한다.¹¹⁾

〈표 5〉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소재지와 관할지역

항소법원 명칭	소재지	관할지역(states)
First Circuit	보스턴(Boston)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Second Circuit	뉴욕시(New York City)	코네티컷, 뉴욕, 버몬트
Third Circuit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버전 아일랜드
Fourth Circuit	리치몬드(Richmond)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Fifth Circuit	뉴올리언스(New Orleans)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Sixth Circuit	신시내티(Cincinnati)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Seventh Circuit	시카고(Chicago)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Eighth Circuit	세인트루이스(St. Louis)	알칸사,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Ninth Circuit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콜, 하와이, 아이아호, 몬테나,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
Tenth Circuit	덴버(Denver)	콜로라도, 캔사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Eleventh Circuit	애틀란타(Atlanta)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D.C. Circuit	워싱턴 D.C.(Washington D.C.)	워싱턴 D.C.

출처: 채동배(2004:30).

③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연방법원의 최종단계, 그리고 연방법 또는 헌법문제에 관한 주법원의 최종단계에는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옛날에는 ‘정부의 3府 중 가장 약하고 제일 위험하지

-
- 10) 이것은 원래 옛날 ‘순회목사(circuit rider)’라고 불리던 목사들처럼 항소법원 판사들이 자기 관할구역 내의 각 지역을 ‘순회’하는 여행을 하면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11개 순회지구는 전국적으로 나뉘어 있고 워싱턴(Washington D.C.)에는 별도로 12번째 순회지구 항소법원이 있다.
 - 11) 따라서 증인이 다시 출두할 필요도 없고 사실에 관한 증거는 청취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다만 제1심의 재판기록과 양쪽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brief)’를 검토하고, 각 15분에 걸친 양쪽 변호사의 구두변론(oral argument)만을 청취한다.

않은 府' (the weakest and least dangerous of the three branches of the government)라는 별명을 들었지만 현재는 행정부나 의회의 권위를 초과할 만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합의제로 심판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판결을 내린다. 원칙적으로 상고사건만 심판하지만 헌법상 두세 가지 경우에는 제1심의 역할을 행사할 수도 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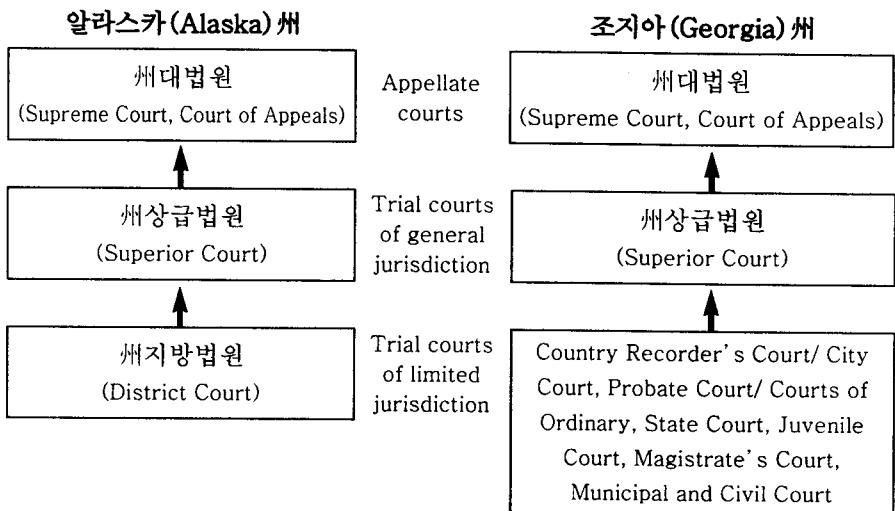
2) 州의 법원조직

원래 독립적인 주권을 가졌던 州정부는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스스로의 법원제도를 가지고 자기 州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들 50개 州는 획일적인 사법제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각기 상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사법제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각 州들은 연방법원제도와 마찬가지로 1심법원과 항소심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사법판단의 신중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3심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2심제도를 채택한 州도 적지 않다.(<그림 4> 참조)

① 州1심법원 (Trial Courts)

州의 1심법원은 '제한적 관할권(limited jurisdiction)'을 가진 법원과 '일반적 관할권(general jurisdiction)'을 가진 법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³⁾

-
- 12) 연방대법원은 단순히 소송 당사자들을 위하여 하급심의 옳고 그름만을 심판하는 기능을 넘어서, 최종적인 법률 해석을 하며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법원'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사권을 통하여 정책법원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사들은 당연히 막중한 책임을지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사 개개인의 가치관, 철학, 세계관에 의하여 대법원 판결의 방향이 달라진다.
 - 13) 1심법원은 카운티(county) 혹은 시(city)에 설치하는데, 인구가 많은 카운티는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을 분리하고, 인구수에 따라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카운티의 경우에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카운티가 합하여 하나의 1심법원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들 법원의 판사들은 일정 기한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주에 따라 임명 또는 선거에 의해 선발한다. 연방법원에서 와 마찬가지로 재판은 배심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경우 판사에 의한 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모든 재판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1심재판의 판사는 언제나 단독심이며 합의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Cole and Smith(2002: 248)

〈그림 4〉 알라스카주와 조지아주의 주법원조직

제한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가 일정 액수(예를 들면 100,000달러) 이하인 사건만 취급하고, 형사사건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죄만 취급한다. 또한 취급하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제한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 분류되는 법원으로는 ‘청소년법원(Juvenile Court)’, ‘가정법원(Family Court)’, ‘유산상속법원(Probate Court)’, ‘교통법원(Traffic Court)’, ‘시법원(Municipal Court)’, ‘카운티법원(County Court)’, ‘소액재판법원(Small Claims Court)’ 등이 있다. ‘일반적 관할권’을 가진 1심법원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에 제한 없이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재판할 수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를 재판할 수 있다. 이들은 대개 ‘지방법원(District Court)’ 혹은 ‘상급법원(Superior Court)’이라고 불린다.

② 주항소(고등)법원(State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대부분 주는 연방항소(고등)법원과 견줄만한 지방항소(고등)법원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Appellate Courts,’ ‘District Courts of Appeal,’ ‘Special Courts of Appeal,’

'Courts of Civil Appeals,' 'Courts of Criminal Appeals' 등이 있다. 그러나, 어떤 州에는 이러한 항소(고등)법원이 없으며, 제1심 재판 후 곧바로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며, 대법원은 심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¹⁴⁾ 항소법원이 없는 州를 제외한 39개 州에서는 제1심에 불복하는 소송 당사자들의 항소를 받아주는 법원을 '항소(고등)법원'이라고 부른다. 항소법원은 州 전체를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그 구역 안에 위치한 모든 1심법원으로부터 제기되는 항소를 심판하며, 항소사건은 판사 3인의 합의제로 판결하는 것이 보통이다.¹⁵⁾

③ 州대법원(State Supreme Court)

제1심 또는 제2심으로부터 각 州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다. 각 州의 대법원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¹⁶⁾ 州마다 최고법원을 설치하여 소송 당사자들의 최종 상고사건을 심판함과 동시에, 주정부의 중대한 법률문제 혹은 향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회정책들을 판결하게 한다. 특히, 텍사스 州와 오클라호마 州의 경우는 2개의 최고법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민사사건의 상고만 취급하는 대법원(Supreme Court)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사건의 상고만 다루는 형사최고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s)이다. 州고등법원과 달리, 州대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상고사건을 선택적으로 접수하고 판결하며, 다만 사형을 받은 피고의 경우

14) 예를 들면, Delaware, Hawaii, Maine, Mississipp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orth Dakota, Puerto Rico, Rhode Island, South Dakota, Vermont, West Virginia, Wyoming주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15) 휴스턴은 구역이 위낙 방대하여 항소법원을 두 개 설치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서 결정한 '사실에 관한 문제들(questions of fact)'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법률문제(questions of law)'만 심사하여, 하급심에서 '법률상의 오류(error of law)'를 범한 것이 있는지 여부만 결정한다. 따라서 증인이 출두하여 증언할 필요는 없으며, 1심재판에서 제출한 재판기록과 변호사의 '항소이유서'만 검토한 다음, 양측 변호사로부터 15분간의 구두변론을 청취한 후 판결을 내린다. 형사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피고가 무죄로 판결났을지라도 이중위험금지조항 때문에 검사가 그 사건을 항소할 수 없다.

16) 일반적으로 'Supreme Court'라고 하지만, 'Court of Appeals' (Maryland州와 New York州), 'Supreme Judicial Court' (Maine州), 또는 'Supreme Court of Appeals' (West Virginia州)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는 최고법원이 의무적으로 상고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다. 주대법원은 7~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전원 합의제로 사건을 심판한다. 그리고 상고 사건의 진행절차와 과정은 항소법원과 비슷하다.¹⁷⁾

IV. 독일과 미국의 법원 비교분석

1. 사법체계

1) 법체계의 비교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대륙법계 국가로 대표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재판하는 일반 법원과 함께 별도로 행정사를 다루는 독립된 행정법원을 가지고 있어 공사법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를 행정국가 또는 행정제도국가라고 부른다. 이러한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 국가를 의미하는데, 2차대전 이후에는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적 성격이 가미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법은 영국에서 발전한 보통법(Common Law)의 법체계를 계승하여 발전시키며 형성되었다. 따라서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등이 일반법원에서 모두 다루어지는 공사법이 일원화된 체계이다. 보통법은 불문법주의, 사인소추주의 배심제도,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불문법주의 대신 제정법주의를, 사인소추 대신 공소제도를 택한 이외에는 영국의 보통법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형사사법체계의 비교

독일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통제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의 강력한 여과절차를 거치는 것이 이 모형의 특징이다. 독일은 형사절차에서 기소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편의주의인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독일의 검사는 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17) 다만 11개 주에는 제2심에 해당되는 항소법원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에서 직접 대법원으로 항소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2심제도에 해당된다. 대법원의 판사들 역시 각기 세 명 정도의 법률연구원을 두고 있음은 항소법원의 경우와 같다.

한 공소를 제기할 의무를 진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와 같이 당사자주의나 배심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며 국가소추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보충적으로 사인소추제도를 택하고 있다(김종구, 2004: 153). 또한 범죄를 중죄, 경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는 ‘질서위반법’을 통해 사법경찰에 의하여 다루도록 하여 재판이나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다 행정적이고 관리적인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공소제도는 대륙법계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배심제도와 당사자주의 및 엄격한 증거법칙이 지배하는 공판중심주의로서 형사재판에서도 검사와 변호인이 민사재판의 원고와 피고처럼 상호 대립하여 주장과 입증을 하고 판사는 중립적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는 Adversary system이 철저히 유지되고 있다(김종구, 2004: 210). 따라서 법원은 증거수집이나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어떤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보다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시되는 각종 자료를 기초로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에 중점을 둔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할 의무를 지니지만, 미국의 제도 하에서 검사는 범죄의 입증과 피고인에 대한 중형부과에만 전념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2. 사법조직의 특성

1) 국가체계에 따른 비교

독일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큰 특색은 독일이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은 연방제국가로서 16개의 각 주마다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16개 주정부와 협력적인 연방체제를 이루고 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법(Grundgesetz)은 상당 부분이 연방과 주 사이의 관계 형성에 관한 것이다. 연방과 주는 각각 책임과 능력을 갖춘 국가라고 보는 것이 연방국가의 실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김종구, 2004: 152). 이러한 연방국가제도하에서 모든 형사사법제도 역시 연방과 주로 분리되어 있으며, 법원 역시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분리된 이중체계이다. 주의 형사사법기관은 연방과 연계는 되어 있으나 비교적 독립적으로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다. 각 주의 법원조직

의 구성과 체계는 16개의 州마다 각기 다른 법률로 규정되어 매우 상이하다.

미국 역시 독립 후 연방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연방주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즉, 연방법원의 구성 및 제한적인 관할권에 대해서만 헌법에 규정해 놓고 나머지는 모두 州법원에 위임함으로써 각 州는 법원의 조직 및 운영이나 재판제도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구조를 형성해 오고 있다. 연방법과 주법은 병존하고 州에 따라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연방법원과 州법원도 각자의 관할을 가지고 있는 이중체계로 독일과 조직구성 방식이 유사하다. 대체로 계약, 불법행위, 가족법, 형사법 등 일반적인 법은 州법이며, 연방헌법 및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연방법률 및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사항 등은 연방법원의 소관이다. 50개의 州와 연방정부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법률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에는 51개의 서로 다른 독자적인 재판관할권(jurisdiction)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할 구분은 미국헌법에 의해 결정되나 때때로 연방법원의 관할과 州법원의 관할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 중복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2) 재판권에 따른 비교

독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법권이 전문재판권에 따라 헌법재판권과 5개의 독자적인 재판권으로 재판관할이 분할되어 있다. 법원의 수도 많고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원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독일 연방 및 州법원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독일법원현황

재판권	헌법 재판권	통상 재판권	노동 재판권	행정 재판권	사회 재판권	재정 재판권
연 방 州	연방헌법 재판소	연방통상 법원	연방노동 법원	연방행정 법원	연방사회 법원	연방 재정법원
	州헌법 재판소 (15)	州고등법원(24) 지방법원(116) 구법원(706)	州노동법원(19) 지방노동 법원(123)	州고등행정법원(16) 州지방행정법원(52)	州사회법원(16) 지방사회 법원(69)	州재정 법원(19)

출처: 이원우(2001: 293).

반면에 미국의 사법조직은 사법권이 독립적인 재판권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 노동, 통상, 행정, 사회재판권 등이 분리되어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재판권에 따른 분야별 법원이 따로 없고 일원화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3) 심급제에 따른 비교

독일은 복심제로 인하여 심급에 따른 법원조직 및 관할 배분 요소가 추가되어 매우 복잡한 조직과 사법권 구성을 갖고 있다. 대체로 2개의 심급으로 구성되고 최종심은 연방의 최고법원에서 관할한다. 단, 재정재판권은 1개의 심급만 있어서 2심제로 운용되고 민사와 형사사건을 다루는 통상법원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최하급 심인 구법원(Amtsgericht)을 설치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재판관할별로 이심제를 택하는 곳도 있다. 미국의 심급제도는 삼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연방법원의 경우는 조직 이론상으로는 삼심제이도 이나 실제로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연간 12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주법원의 경우는 삼심제가 대부분이나 이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도 적지 않다.

3. 운영상 특징

1)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독일의 법원에는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판사의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발달해 있다. 다음은 이러한 대표적인 제도에 대한 것이다. 첫째, 범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리절차를 다양화시키는 제도이다. 범죄를 중죄, 경죄, 질서위반범으로 3등분하여 중죄와 경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질서위반사범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질서위반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특히, 1960년 이후 질서위반법을 도입하여 경미한 사건을 많이 처리하게 되면서 형사사법업무의 경감과 비용절감을 가져왔다. 질서위반법과 같은 제도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사건의 양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독일의 구법원 및 구판사제도는 자유형 4년 이하의 선고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한 제도이다. 1998년에 연

방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구법원에서 처리된 총 923,335건의 형사 사건 중 구법원을 통해 연간 처리된 사건은 무려 841,212건이었는데, 이는 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의 90%를 넘는 숫자이다. 이와 같은 간이재판제도의 도입은 급증하는 업무량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구판사의 업무는 상위직 법원공무원으로 구판사 시험을 합격한 사법보조관(Rechtspfleger)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법상 법관 업무로 제한되지 않은 구법원 관할사건의 일부를 처리하며 등기, 경매, 비송사사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서 법원이나 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독일 구법원과 유사하게 간이재판의 형태를 취한 미국의 제도가 치안판사제도이다. ‘Magistrate’ 또는 ‘Justice of Peace’로 불리우는 치안판사제도는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州에 설치되어 있는 Magistrate Courts, Justice of the Peace Courts, Municipal Courts, District Courts, Police Courts, Recorder’s Courts 등 각 제한된 관할권을 가진 법정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칭 Magistrate Court라고 부른다. 치안판사는 통상 경미한 형사범죄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법규위반사건을 관할한다. 주에 따라서는 모든 경죄를 관할하기도 하며 이러한 사건의 90% 이상을 치안판사가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인한 많은 절차와 비용 및 인력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도 90% 이상은 공판초기 단계에서 기소인 부절차(Arraignment)에 따라 유·무죄 답변을 하게 되고, 만일 유죄라고 답변하는 경우 법원은 즉시 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후일 협상을 하기 위하여 유죄의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당수의 피의자가 검사와의 유죄답변협상절차를 거쳐 선고가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신속 처리되며 극소수 사건에 대해서만 배심재판의 공판절차로 처리되고 있다.

2) 법률서비스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독일에서 시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제도로서 일반 민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재판과 특별법원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는 비직업법관

(Laienrichter) 제도가 있다.¹⁸⁾ 비직업법관은 당해 법원의 관할 내에 거주하는 전체주민들 가운데서 선발되며 직업법관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법관과 동일하게 중립의 의무가 적용되고 심리와 결정에서도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며 주민의 대표성을 최대한 달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임용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미국은 영국의 배심제를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제고해 왔다.¹⁹⁾ 배심은 시민으로부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선발된 배심원의 합의체이고,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의 심리에서 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실인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법관이 배심의 사실인정을 뒤집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12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되고, 평결은 만장일치제이나 주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 12인 미만의 배심원, 만장일치가 아닌 특별다수결에 의한 평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사법개혁위원회, 2004a). 배심제도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국민에 대한 법률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직업적 법관이 지니는 한계와 사법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양건, 2000: 98).

3) 법원행정지원체계의 운영

독일의 경우 각 법원마다 법원의 운영과 관리 및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원 행정국이 설치되어 있어 분권화된 행정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대한 양의 문서작업과 데이터 베이스 업무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기술부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의 연방대법원의 경우는 기술부서의 담당업무량과 내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부서의 개혁 작업에서도 우선적인 대상이 되고 있으며 IT기술을 기반으로

18) 이들은 형사재판에서는 참심원(Schoffe), 재정재판에서는 상사법관(Handelsrichter), 기타법원에서는 명예법관(Ehrenamtliche Richter)이라고 불리운다.

19) 영국의 배심제는 식민지 시절때부터 미국에서 시행되었는데 식민지의 이익과 영국의 이익이 대립하는 가운데 배심재판(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의한 재판)은 식민지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미국 헌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모든 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州고등법원의 경우는 인사, 총무, 조직, 정보 등을 다루는 행정국과 문서, 공증, 공보, 판사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장보좌국으로 나누어 법원행정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²⁰⁾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법원의 운영을 판사들이 주로 맡아왔으나 최근 들어 법원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각각 일원화된 법원행정조직을 설치하였다. 예를 들면 조지아주의 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나 미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각 법원별로 Clerk Office를 두어 판사업무와 법원업무를 보조하는 기관도 함께 두고 있어서 판사의 법률업무를 돋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조지아주의 법원행정처는 다음과 같이 7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지아주내 각 법원들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표 7〉 조지아주 법원행정처 조직과 업무

구 분	담당업무
법원 서비스	• 연구 및 사법업무/법률적인 연락담당/자격증 및 규제 업무/법률체계의 형평성 제고 업무
행정	• 예산 및 재정/법원 요금 프로그램의 운영
일반 상담	• 법률 상담 및 서비스
입법부 및 행정부 관계	• 보조금 관리/마약법원관련 협조업무/입법부 관계 업무
인적자원	• 커뮤니케이션 및 출판업무/훈련/비상운영/비디오 회의준비
기술부	• IT 및 기술관련 업무

출처: <http://www.georgiacourts.org/aoc/>(검색일: 2005. 2. 10)

4. 종합비교

이상 독일과 미국의 사법체계와 조직 및 운영상의 특징을 요약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20) 프랑크푸르트 州고등법원 홈페이지(2004) 참조

〈표 8〉 종합표

구분	기준 및 유형	독 일	미 국
사법체계	법률체계	대륙법계 모형	영미법계모형
	형법체계	범죄억제모형	합법절차모형
조직구성	국가체계	이중체계	이중체계
	재판권	분리체계	일원체계
	심급	삼심제	삼심제
운영방식	소송절차의 신속성	경죄, 중죄 구분처리 질서위반법 도입 구법원·구판사제도	치안판사제도
	민주성제고	참심제도/명예법관제도	배심제도
	법원행정	분권형	집권형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사법체계와 조직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국가의 체계나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선진국의 제도들을 여과없이 벤치마킹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특히, 법원과 판사의 업무부담률을 감소시키고 법률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는 한국에 도입하여 운용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첫째, 독일의 구법원 및 구판사제도는 자유형 4년이하의 선고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한 제도이다. '98년에 연방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구법원에서 처리된 총 923,335건의 형사사건 중 구법원을 통해 연간 처리한 사건은 무려 841,212건이었다. 이와 같은 간이재판제도의 도입은 급증하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 '질서위반법'과 같은 제도는 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국민을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에서 구제하고 처리해야 할 업무를 줄이기 위

하여 ‘질서위반법’을 도입하여 기존에 범죄로 취급되던 일정한 행위유형을 형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행정질서법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제도는 소송이나 공판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줄이고 사법경찰권을 강화하여 사법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논의가 한국에서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떠한 범죄를 그 대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경우도 ‘Magistrate’ 또는 ‘Justice of Peace’로 불리우는 치안판사제도를 통해 경미한 형사사건을 90% 이상 처리하고 있으며,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도 90% 이상은 공판초기 단계에서 기소인부절차와 유죄답변협상에 의해 신속 간이처리되며 극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배심재판의 공판절차로 처리되고 있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주의에 토대를 두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진실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륙법계 방식을 기초로 영미식 공판주의를 혼합하다 보니 간이절차는 생략된 채, 공판주의를 통한 철저한 심리과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간이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며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의 배심제도의 경우가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독일의 전문적인 재판권 분리와 법원 분리체계는 사건이나 사안별로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조직체계인 것 같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법관의 존재 및 이를 보조하는 운영인력의 육성 등이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단계까지는 발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상으로 독일과 미국의 사법체계와 조직구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각각의 기준별로 비교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기술적 관점에서 독일, 미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보았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을 통한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기술적 관점에서 본 횡단면적 비교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장단점을 나름대로 추출할 수 있었고 특히, 연구가 미비했던 법원에 대한 조직구성과 운영을 다루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원치. (1983). 「한독 검찰제도의 비교연구」. 해외파견검사연구 논문집.
- 김종구. (2004). 「형사사법개혁론」. 법문사.
- 김형만 · 신현기 외. (2003). 「비교경찰제도론」, 서울: 법문사.
- 김홍창. (2003). 독일검찰의 법적인 조직 및 지위.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 박상열. (2002). 미국의 법원조직과 그 관할권. 「사법행정」, 11: 18-27.
- 박주안. (1972). 「미국의 검찰제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배종대 · 이상돈. (1997). 「형사소송법」. 서울: 홍문사.
- 사법개혁위원회. (2004a).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 사법개혁위원회. (2004b). 「국민의 사법참여」. 4차회의 보고자료.
- 신동운. (1988). 법조선진화와 검찰인구. 「서울대 법학」, 29(1): 46-61.
- 신현기 · 이영남. (2003). 「경찰조직관리론」. 서울: 법문사.
- 양 건. (2000). 국민의 사법참가. 대법원 주최「국민과 사법」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0. 10.
- 이상윤. (2003). 「英美法」. 박영사.
- 이원우. (2001). 독일 법원의 구성과 체계. 박웅격 외. 「독일연방정부론」. 백
산자료원.
- 이윤근. (2002).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 이황우. (2002). 「경찰행정학(제3판)」. 서울: 법문사.
- 장병혜. (1983). 「미국정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정연주. (2001).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박웅격 외.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 정중섭. (2001). 「헌법연구 2」, 박영사.
- 진계호. (2000). 「형법총론」.
- 진계호. (2000).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 채동배. (2004). 「법으로 보는 미국」. 살림출판사.
- 한인섭. (2000). 형사사법 시스템의 혁신과 법률서비스. 「법과 사회」: 73-99.
- Bayley, D. H. (1992). Comparative Organization of the Police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In M. Tonry & N. Morris (Eds.),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21: Modern Polic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09-545.
- Cole, George F. & Smith, Christopher E. (2001). *The American System of Criminal Justice*. Wadsworth, Thompson Learning Inc.
- Hancock, Barry W. & Sharp, Paul M. (1996). *Criminal Justice in America: Theory, Practice, and Policy*.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Merryman, J. H. (1985). *The Civil Law Tradition*. 2nd e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cker, H. L. (1968). *The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Reichel, Philip L. (2002).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s: A Topical Approach*.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Terril, R. J (1982). Approaches for Teaching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to Undergraduates. *Criminal Justice Review*, 7(1): 23-27.
- 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0). *Law Enforcement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Statistics*.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for Justice Programs. (2000).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

<홈페이지>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독일 전체 사법기관 목록 및 링크 사이트: <http://www.deutschejustiz.de/>

index.html

독일 전체 경찰기관 목록 및 링크 사이트: <http://www.polizeideutschland.de/>

미국 법무부 사이트: www.ojp.usdoj.gov

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Structures and Practice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 Focusing on Court System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Jung-Hai Kim · Yoo-Sung Choi

This study deals with the structures and practices of court system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For the purpose, this study introduces the theorie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from which it draws three categories for a comparative discussion as a research frame: criminal systems,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courts and their practices. To help understanding of court systems in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reviews and examines the present states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practices of court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s a main part, this study analyzes the court systems and practice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omparatively, based on the categories in the research frame. The conclusion in this study makes several applicable suggestions to the judicial reforms in Korea for benchmarking.

[Key words : Court, Criminal Justice Systems, Germany, the United States, Judicial Reforms]